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되어 안전점검·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가. 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나.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7조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1,000	

개월 미만인 경우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마. 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500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00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000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3,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2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3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2,000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1,000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6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	법 제67조제3항제2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지 않은 경우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호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8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 · 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	법 제67조제4항제9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 · 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	법 제67조제	1차 위반:	시장 · 군수 · 구청장

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2항제6호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며.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10호	100 300 50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11호	100 200	시·도지사
서.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12호	200	시·도지사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13호	200	시·도지사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법 제67조제	500	시·도지사

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경우	4항제14호			
처. 법 제38조(법 제28조의2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 4항제15호	200		시·도지사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 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 1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9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0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 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 2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2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 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 4항제1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허. 삭제 <2020. 12. 1.>		500	
고.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 르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제 3항제3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비고

-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및 더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표 제2호고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7